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84
----------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김 윤 · 박지원 · 남인순
진성준 · 이훈기 · 백혜련
김우영 · 김남희 · 장종태
권향엽 · 박해철 · 전종덕
윤준병 · 최혁진 · 최민희
김승원 · 이광희 · 황정아
김 현 · 박용갑 의원
(2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재활·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료보장은 취약하고 심장질환 전문인력 및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임. 또한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전문 치료기관의 지역별 격차로 인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음.

이에 심장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가 책임과 지원 근거를 분명히 했음. 또한, 국가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의료기관 및 대학의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아울러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개념과 소아심장거점병원 지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심장질환 환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심장판막증, 심근염, 폐고혈압이 심혈관 질환임을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의 범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가목, 제2조제1호사목 신설).
- 나.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을 치료가 어렵고 재발 위험이 높아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장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장질환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다.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이란 출생 직후 또는 소아기에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치료 효과가 현저한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팔로네징후 등의 선천성 심장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장질환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 라. “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바. 종합계획 수립 시 진료권 중심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 기반시설 확충 및 진료체계 개선,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항,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진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 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종합계획 추진 실적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 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제1항).
- 차.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을 중등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하며 만성 심뇌혈관질환자의 지속 사후관리를 추가함(안 제13조의2 신설).
- 카.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 보건의

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자에게 지역별로 전문적 진료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의료기관 및 대학의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및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1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심근경색 등”을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심장판막증, 심근염, 폐고혈압 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4.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이란 치료가 어렵고 재발 위험이 높아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장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장질환을 말한다.
5.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이란 출생 직후 또는 소아기에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치료 효과가 현저한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팔로네징후 등의 선천성 심장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장질환을 말한다.
6. “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진료권 중심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7.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진료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8.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항
- 9.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진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종합계획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절차, 방법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진료권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중증 응급”을 “중증·응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권역 또는 지역 내”를 각각 “권역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를 각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등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관한 연구, 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만성 심뇌혈관질환자의 지속 사후관리

4.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지역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의 평가·재지정·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권 내에서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운영 기준에 따르되,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소아심장거점병원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자에게 지역별로 전문진료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아심장거점병원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제12조 및 제13조”를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
7.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전문의, 간호사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8.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

9.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진료체계 개선에 드는 비용

10. 소아심장거점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시 제4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 중 “제13조제5항”을 “제13조제5항(제13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 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 ----- ----- ----- -.
가. <u>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u>	가. <u>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심장판막증, 심근염, 폐고혈압 등</u> -----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u><신 설></u>	사. <u>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u>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이란 치료가 어렵고 재발 위험이 높아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장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장질환을 말한다.</u>
	5. <u>“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이란</u>

<u><신 설></u>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생략) <u><신 설></u> ② (생략)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u>출생 직후 또는 소아기에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치료 효과가 현저한 심실대혈관 연결불일치, 팔로네징후 등의 선천성 심장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장질환을 말한다.</u> 6. “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5. (생략)

<신설>

6. (생략)

③ ~ ⑥ (생략)

<신설>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진료권 중심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
항

7.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치료
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진
료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8.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
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항

9.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진
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종합계획의 평가)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
진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의 절차, 방법 및 주기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생략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 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 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생략)
- ②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

-----진료권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

1. 중증·응급-----

2. 권역 내-----

3. 권역 내-----

4. 권역 내-----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략)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재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

④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

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

1. ~ 4. (현행과 같음)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

<신 설>

제13조의2(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
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같
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
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지역심
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등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관
한 연구, 통계사업 관련 자료
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만성 심뇌혈관질환자의 지속
사후관리

4.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지역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
의 평가·재지정·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13
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
한다. 이 경우 “권역심뇌혈관질
환센터”는 “지역심뇌혈관질환

<신 설>

센터”로 본다.

제13조의3(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 의료서비스를 진료권 내에서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운영기준에 따르되,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illegible]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
2-----

6.·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비용의 지원) ① -----

--지원하여야 한다.

1. ----- 제 1
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
13조의2제1항-----

2. ~ 5.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 2. ~ 5. (현행과 같음) 6.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 7.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전문의, 간호사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8.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 9.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진료체계 개선에 드는 비용 10. 소아심장거점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시 제4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청문) ----- 제13조제5항(제13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